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명: **NH-CA 파워 아세안 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 호[주식]**
2. 정정대상 서류: 투자설명서
3. 효력발생일: 2015 년 5 월 7 일
4. 정정사유:
 -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투자결정시 유의사항)
 - 운용전문인력 변경
 -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
 - 법인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반영
 - 채권평가회사 추가사항 반영
5. 정정대비표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 정기갱신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운용개수 및 규모) - 주된 투자대상국가 현황 -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-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 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 <p>4.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	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,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 <p>4. 원본손실위험,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(일괄)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<중략></p> <p>8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9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</p>

		<p>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
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</p>	<p>이승재 <주식운용본부 차장></p>	<p>윤태환 <주식운용2본부 과장></p>
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</p>	<p><해지 위험> 다음과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.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- 특히, 상기 3, 4 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해지 위험>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.(임의 해지)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<u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</u> <u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- 특히, 상기 3,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u></p>
<p>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 -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(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</p>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<u>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-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(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</p>

	<p>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세율 38%, 주민세 3.8%)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 	<p>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세율 38%, 주민세 3.8%)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(법인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</u>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
<p>제4부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IS 채권평가 - 한국자산평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IS 채권평가 - 한국자산평가 - NICE피앤아이 - 에프엔자산평가
<p>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가. 의무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-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-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-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	<p>가. 의무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-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-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-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